의 안 번 호 919

【201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】검上上ス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12. 08. 29(수)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2. 08. 29(수)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2. 09. 06(목)

2. 제안설명 요지

-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이고 미래전략적인 계획을 수립 함으로서 미래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·운영하는 기반 조성
- O 새로운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 도모

3. 주요내용

- O 계획기간 : 2012년 ~ 2016년(5개년 연동)
- O 기본방향
 - 기능전환·쇠퇴부분, 유사기능 통·폐합 등을 통한 효 율적인 조직 운영
 -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충원, 보건분
 소 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인력증원 최대한
 억제
- O 기구조정 및 계획정원
 - 기 구 조 정 : 증1실, △1단, 증4담당(증5담당, △1담당)
 - 공무원 정원 : 증21명('12년 10명, '13년 7명, '14년 3명, '15년 1명)
 - 무기계약근로자 : △20명(119명 → 99명)

4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(대통령령) 제23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
- 5. 운용계획안: "따로붙임"

6. 검토의견

-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23조에 따라 중기기본인력계획을 5년간의 연간계획 으로 수립하되,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, 총액인건비내에서 자율적이고 미래전략적인 미래정원을 예측하여 새로운 행정 환경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.
- O 구청장은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시장과 협 의하도록 되어있고, 광역시장과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 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.

※ 관계법령

- §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(대통령령)
- 제23조(인력운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(이하 "기본인력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,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·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이 항에서 같다)와 협의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시·군·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6.29>
 - ④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 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,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2.6.29>
 -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.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>
- §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시행규칙

제3조(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 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·기능별 인력 배치계획
- 2.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
- 3.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
- 4.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(공사)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